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전화 (02)523-9752 팩스 (02)766-6025
http://www.pharmacist.or.kr . E-mail:kpkyp@chol.com

문서번호 건약230608-01
시행일자 2023. 06. 08.
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이동근 사무국장)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 목 최중윤 의원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23년 5월 24일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기재사항
 - 발의안에 대한 의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붙임자료 참고)
 - 성명: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대표: 신형근)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 전화번호: 02) 523 - 9752
- ◎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중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38) 에 대한 의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신형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2238)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의견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통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조건부 허가제도를 통해 허가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수 년내에 조건을 이행하여 검증을 거친 이후, 정식 허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약사가 제출기간 내 결과보고서(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상시험 중 정기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도 식약처는 이를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충분히 검증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식약처의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 내용은 의약품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기에 찬성 의견을 표시합니다.

2. 이유

-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제약회사는 약물의 3상 임상시험 계획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조건부허가 의약품은 치료기회의 확대를 위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의약품의 사용이 환자에게 치료이익을 가져오는 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를 방치한 경우 오히려 의약품 사용에 의한 환자의 건강 위해가 우려됩니다.
 - 국제적인 의학학술지 BMJ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가속승인(한국의 조건부허가)을 통해 허가된 의약품 253개 중 112개 약물이 정식허가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허가 의약품 중 절반 가까운 의약품이 최종 임상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것입니다.
 - 최종윤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조건부로 허가된 의약품 35품목 중 2022년까지 허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이 15품목에 달했습니다. 같

은 기간, 국내 회사가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10품목이었는데, 이 중 정식허가로 전환된 의약품은 단 2품목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허가된 ‘큐피스텀’과 ‘헌터라제’, 2014년 ‘파바갈 주’ 모두 허가 된지 10년 가량 경과되었지만 여전히 결과보고서(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입니다.

- 신속한 허가만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조건부 허가 의약품)을 식약처가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 회사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제약사가 부득이하게 임상시험 자료 제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최중윤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에 조건부로 허가받은 의약품 중 3상 제출기한을 연기한 의약품은 8품목이었지만, 단 2품목만 3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 6품목은 6~10 년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허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약품도 제출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관련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약사법 제 18조 및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관련한 심의과정에서 제출기간은 주요한 논의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제약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며, 관련 자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